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위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195
----------	-------

발의연월일 : 2025. 8. 14.

발 의 자 : 김위상 · 추경호 · 김형동
김선교 · 구자근 · 우재준
김소희 · 조지연 · 송석준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지역노사민정협의회는 지역의 노동자, 기업인, 시민사회,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임.

그러나 해당 규정이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일부 광역자치단체만 간헐적으로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활성화돼 있을 뿐, 지방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사실상 제도가 사문화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국가의 책무에 추가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하위 시행령에 있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 근거 규정을 상위 법률에 두도록 함으로써 지역노사민정협의회가 진정한 의미의 지역별 사회적 대화 기구로 거듭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등).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조제1항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제2항 중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의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고용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 8. (생략)	제2조(국가의 책무) ----- ----- ----- ----- ----- ----- 1. ~ 5. (현행과 같음) <u>5의2. 제3조제1항의 지역 노사민정 지원에 관한 사항</u> 6. ~ 8. (현행과 같음)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생략) ② 국가는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지원할 수 있다.</u> ③·④ (생략) <u><신설></u>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지원하여야 한다.</u> ③·④ (현행과 같음) <u>제3조의2(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노사민정으로 구성된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u>

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공동으로 한다.

④ 협의회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3. 노사관계·고용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5.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지역고용심의회에서 심의하는 사

항인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
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
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
영, 사무국의 설치·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